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On the Style and Vocabulary of Korean Idu Translation from Classical Written Chinese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Dynasty

저자 (Authors)	박성종 Seong Jong Park
출처 (Source)	한국어학 53 , 2011.11, 29-59(31 pages) Korean Linguistics 53 , 2011.11, 29-59(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학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8868
APA Style	박성종 (2011).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29-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7 10: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박성종

Abstract

Park, Seong-jong, 2011. 11. On the Style and Vocabulary of Korean Idu Translation from Classical Written Chinese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Dynasty. *Korean Linguistics* 53, 29-59. Four works were translated from classical written Chinese into Korean idu sentences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dynasty. One of them is Nongseojibyoo(農書輯要), which is known by a piece of handwriting copy. The original book for this copy seems to have been published in 1517 as an enlarged edition of the earlier version in the 15th century by adding han-geul translation. The concept of text is useful in idu translation. Each text usually concluded with a noun phrase. Translating procedure is thought to have gone through with four stages; ① splitting the given text into some parts, ② re-ordering the words of text, ③ changing the Chinese letters into the corresponding Korean free word forms, ④ tagging Korean grammatical bound forms. Idu sentences have two systems of vocabulary; loan words borrowed from classical written Chinese and Korean words represented by Chinese characters. Idu contains many kinds of Korean words; coin words reflecting Korean word order, compound words representing two Korean words, even hybrid words, and so on. And pseudo-Chinese characters made in Korea are rarely found in idu sentences.

주제어: 이두문(idu sentences), 이두 번역(Korean idu translation from classical written Chinese), 農書輯要(Nongseojibyoo), 이두 번역문 문체(style of idu translation), 이두 번역문 어휘(vocabulary of idu translation)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 전기에 한문을 이두로 번역한 글, 즉 이두 번역문의 문체 및 어휘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자 형태의 이두 번역물은 현재 넷이 알려져 있다. 1395년의 『大明律直解』, 1415년의 『養蚕經驗撮要』, 1541년의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¹⁾, 그리고 『農書輯要』가 그것이다. 앞의 셋은 모두 刊本이나 『農書輯要』는 1987년 書誌家 朴永弼씨에 의하여 발견 소개된 筆寫物이다. 이 필사물은 총 146면으로서 이 중 『農書輯要』는 42면을 차지하며 이 밖에 養馬에 관한 내용과 碁譜 등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李鎬澈 1990:4 및 吳仁澤 1993:259). 필사자와 필사 연대가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필사물이 어떤 저본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필사 과정에서 저본에 따라 내용과 형태 면에서 필사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은 점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農書輯要를 베낀 부분만 하더라도 卷尾題 ‘農書輯要終’ 바로 전에 5행의 필사후기를 한문으로 적어 넣은 것이 있는데 이 農書는 八道에 두루 통용되긴 하나 각 지방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嶺南 지방의 농서와는 별도로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필사물 중 農書輯要에 적힌 이두문은 빠르면 15세기 초인 조선 太宗代, 늦잡아도 1517년 中宗代 자료임에 틀림없으므로 함께 묶어 다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4세기 말로부터 16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한문의 이두 번역문 4종을 대상으로 그 문체와 어휘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이하 판심제에 준하여 간략히 『牛疫方』으로 일컫는다. 1541년 원간본의 表題와 卷首題에서는 ‘馬’ 자가 없고, 일부 판본에 따라서는 ‘病’ 자를 생략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개의치 않는다.

2. 諺解와의 관련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시기에는 이두문이 곧 우리나라 글과 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두로 작성하거나 번역한 것을 일컬어 ‘方言’ 또는 ‘俚語’로 호칭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두 번역을 일컬어 方言으로 번역한다고 한 대표적인 예는 鄭道傳이 1394년에 편찬한 『朝鮮經國典』 중의 憲典摠序이다.

今我 殿下 …… 又慮愚民無知觸禁 爰命攸司 將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 凡所斷決 皆用此律 所以上奉帝範 下重民命也 <三峰集 8.9 憲典摠序>
(지금 우리 전하는 ……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 관아에 명하여 『大明律』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한 것이다.)

위 인용문은 훈민정음 창제보다 50년 앞선 시기의 기록이므로 이때 ‘譯以方言’이라 한 것은 결국 이두로 번역한 것을 가리킨다. 明의 법률을 여러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이두로 번역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왕명에 따라 다음 해인 1395년 2월에 간행된 것이 이른바 『大明律直解』이다. 이 책의 金祗 跋文에서는 薛聰이 지은 ‘方言文字’를 ‘吏道’라 하며 이 ‘吏道’ 즉 이두문으로 옮겼음을 좀더 분명히 하였다.

이두문을 方言으로 호칭한 사례는 다음의 실록 기사에서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上又曰 今觀河崙所修元六典 易俚爲文 間有窒碍難曉 趙浚所撰方言六典 則人皆易曉 無乃可用乎 喜對曰 用方言六典 亦可 摠制河演曰 今續六典既以文撰之 元六典亦當用文 不可用方言 其窒碍難曉處 宜令改正。

上曰 元續六典各異，雖並用方言與文，何害。 <세종실록 12년(1430) 4월 12일 辛巳條>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河崙이 지은 『元六典』을 보니 우리말을 한문으로 바꾸어서 간혹 막히고 알기 어려우나, 趙浚이 편찬한 『方言六典』은 사람들이 다 알기 쉬우므로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方言六典』을 쓰는 것도 가합니다.” 하였고, 총제 河演은 아뢰기를 “지금 『續六典』을 이미 한문으로 편찬하였으니 『元六典』 또한 마땅히 한문으로 써야지 방언을 쓸 수 없습니다. 막히고 알기 어려운 곳은 고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元六典』과 『續六典』이 각각 다르니, 비록 방언으로 된 것과 한문으로 된 것을 함께 쓸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위 기사에서의 方言六典은 趙浚이 1397년(태조 6)에 편찬 간행한 『經濟六典』을 일컫는다. 이 법전은 한문이 아니라 이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방언육전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吏讀元六典²⁾으로도 불렸다. 위 기사 중의 元六典은 하륜이 1412년(태종 12) 4월에 편찬한 經濟六典元集詳節 3권을, 續六典은 經濟六典續集詳節 3권을 각각 가리킨다. 두 법전이 모두 한문으로 쓰였는데 특히 元六典은 조준의 『經濟六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뜻은 살리고 ‘俚語’를 삭제하여 편찬한 것이라 한다.³⁾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종은 법전을 굳이 한문으로만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 관리들이 보고 들어 익혀 준수하기가 쉬운 우리말 즉, 이두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 결국 세종은 다음 해인 1431년 5월에 이두로 된 조준의 經濟六典 즉, 吏讀元六典의 강원도 刻板을 보수하여 인출 반포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元六典은 쓰지 말도

2) 세종실록 13년 5월 13일 丙子條 참조.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 모두 공교롭게도 吏讀元六典의 讀를 續으로 잘못 적었음이 흥미롭다. 이 날 기사 중의 詳定元六典은 하륜이 1412년(태종 12)에 편찬한 元六典을 개수하여 李稷 등이 1429년(세종 11) 3월에 펴낸 법전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문으로 쓴 元六典들과 달리 이두로 쓰인 元六典이라는 뜻에서 吏讀元六典으로 호칭한 것이다.

3) 태종실록 12년(1412) 4월 14일 戊辰條 및 13년(1413) 2월 30일 己卯條 참조.

록 명확하게 된다.⁴⁾(세종실록 13년 5월 13일 丙子條 참조)

‘方言’ 대신에 ‘俚語’로 호칭한 사례도 때때로 발견된다.

尙德又啓曰 元朝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古雅 人人未易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鄉曲小民無不知之。上從之 命前大提學李行與檢詳官郭存中成書板行。<태종실록 14년(1414) 12월 6일 乙亥條>

(尙德이 또 아뢰었다. “元 나라의 『農桑輯要』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우리나라의 俚語로써 번역하여 鄉曲의 小民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전 대제학 李行과 檢詳官 郭存中에게 명하여 책을 만들어 판각하여 반행케 하였다.)

이것은 右代言⁵⁾ 韓尙德이 태종에게 農書의 간행을 품신하여 재가 받은 내용의 기사이다. 元의 『農桑輯要』를 우리나라의 ‘俚語’ 즉 이두로 번역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기사에 따라 간행된 책이 1415년 5월의 『養蚕經驗撮要』인지, 아니면 이보다 2년 뒤에 李行이 주관하여 간행한 『養蠶方』⁶⁾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자의 간기에는 韓尙德이 왕명을 받들어 ‘翻譯蠶書’ 즉 누에치는 법을 적은 책을 번역하였고 安騰이 각수를 모집하여 간행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李行이 『農桑輯要』의 내용을 가려 뽑아 만든 내용을 본인이 실제 체험해 본 결과 수입이 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널리 배포할 필요성을 느껴 위 기사 중의 郭存中으로 하여금 ‘本國俚語’로 구절마다 협주를 달아 간행하였다고 한다<태종실록 17년 5월 24일 己酉條>. ‘華

4) 세종 대에서의 법전 정비 및 편찬 작업은 2년 뒤인 1433년 1월에 황희 등이 편찬하여 經濟續六典이라 칭한 正典 6권과 이와 별도로 만든 曆錄 6권을 鑄字所에서 인쇄 간행함으로써 마무리된 듯하다.

5) 왕명의 출납을 맡은 承旨에 해당한다. 麗末鮮初에 사용되었던 관직명이다.

6) 이 책은 『養蚕經驗撮要』와 함께 한동안 유포되어 활용되었던 듯하다. 단종실록 9년(1454) 9월 16일 甲子條 기사에서 이 책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해독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監考로 임명하여 농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語' 즉 한문을 민간이 잘 모를 것을 염려하여 '本國俚語'인 이두로 번역 또는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건국 초기에는 이두가 곧 方言 또는 俚語 즉, 우리말이요 우리 글로 지칭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이전 시기에 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였을 법하다. 현전하는 문헌이 없고 기록상으로 분명히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 생각된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이두가 우리 말을 직접 글로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두로 편찬하거나 번역한 문헌들을 가리켜 諺解라 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두로 된 문헌들을 '譯以方言' 또는 '譯以本國俚語'라 한 점을 감안한다면 養蚕經驗撮要諺解라는 서명을 기대해 봄 직하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흔히 大明律直解로 호칭되고 있는 문헌만 하더라도 원래의 책명은 거의 언제나 大明律였다.⁷⁾ 16세기 중반에 간행된 『牛疫方』의 예 역시 마찬가지다. 한문 원문과 함께 이두와 한글로 된 두 가지 번역문을 함께 수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언해라 이름하지 않았다. 따라서 諺解는 언문으로 번역하거나 譯解한 것만을 지칭하고, 이두의 경우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두 번역물 서명에 번역물임을 밝히지 않은 까닭은 이밖에도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다. 하나는 동일한 서명의 書冊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 원문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논의 대상인 네 문헌 모두 동일한 서명의 다른 책을 찾을 수 없다. 大明律의 경우만 하더라도 비록 明 나라에서 유입된

7) 大明律直解라는 서명은, 安秉禧(2003)에서 잘 밝혔듯이, 일제시대에 우리 古圖書를 해설한 『朝鮮圖書解題』(1915)의 1919년 증보판에서 처음 붙여졌다. 증보판 원고에서도 標目이 '大明律'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판 과정에서 '大明律直解'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 후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이본을 대교하여 활자본을 펴내는 과정에서 『大明律講解』와 같은 類書들과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校訂大明律直解』라 함으로써 大明律直解라는 서명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大明律直解의 또 다른 서명으로서 16세기에 이미 直解大明律이 있었던 사실도 위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洪武 22년律을 저본으로 한 이두 번역물이지만, 원전에 해당하는 ‘大明律’을 조선에서 따로 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무튼 大明律이라 할 때 그것이 원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문과 함께 이두 번역문을 수록한 번역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혼돈을 야기해 왔음은 물론이다.

필사물 『農書輯要』의 경우는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 세종대에 편찬 간행한 『農事直說』 서문에 따르면 태종이 儒臣들에게 명하여 옛 農書들에서 발췌하여 鄉言으로 註를 붙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⁸⁾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한문으로 된 본문에 농사기구를 비롯한 몇 단어들에 대하여 鄉名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농서 원문과 그에 대응하는 이두 번역을 함께 수록한 책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1429년 5월에 『農事直說』을 간행하기 직전의 실록 기사들 중에 몇 개의 農書 관련 내용들이 주목된다.⁹⁾ 함길도와 평안도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이 경상감사에게 농경법과 토지의 성질 등을 경험 많은 농부에게 물어 요점을 모아 책을 만들어 올리고 또 1,000부를 인쇄하여 진상하도록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후에는 의정부와 六曹의 신하들에게 農書를 한 秩씩 하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농서와 관련하여 음미해 볼 것은 金安國의 언급과 현전 필사물에서의 서문 내용이다.

如農書蠶書 乃衣食之大政 故世宗朝翻以俚語 開刊八道 今亦頗致意務本之事 故臣亦加諺解 <중종실록 13년(1518) 4월 1일 己巳朔條>

8) “嘗命儒臣 撝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鄉言 刊板頒行 教民力本”. 『農事直說』 서문 및 세종실록 11년(1429) 5월 16일 辛酉條.

9) 세종실록 10년(1428) 윤4월 11일 壬辰條 및 同月 13일 甲午條와 11년 2월 6일 壬午條 참조.

(農書와 蠶書는 衣食에 관한 정사의 근본인 까닭에 세종조에 俚語로 번역하고 팔도에서 개간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농업에 힘쓰는 일에 뜻을 두기 때문에 신 또한 諺解를 덧붙였습니다.)

『農事直說』은 1429년에 한문으로 간행한 책이다. 그러므로 위 기사에서 언급한 세종 대에 俚語로 번역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이 때의 번역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에 이두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서 현전 필사물 農書輯要의 서문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필사물은 서문 2장에 한문 원문과 이두문을 필사한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新刊農書輯要序’라 제목을 붙였으며 1517년(중종 12)년 8월 17일에 안동도호부사 李堦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 첫 시작 행의 권수제는 ‘農書輯要’이고 권미제 역시 ‘農書輯要’로 적혀 있다. 서문 중의 다음 내용은 매우 주목된다.

是書 舊有吏釋 監司金相公安國 深體國家務農桑之意 并蠶書皆益以諺譯命吾府 鏤梓以廣

(이 책은 예전에 이두로 새긴 것이 있는데 감사 김안국 상공께서 국가가 농상에 힘쓰는 뜻을 깊이 헤아려 잠서와 더불어 언문으로 번역함으로써 도움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동대도호부에서 판각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예전에 ‘吏釋’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잠서와 함께 農書인 이 책을 김안국이 언해하였다는 사실이 정확히 위 실록 기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吏釋’이라 한 것은 세종 대에 이두로 새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종 대에 『農事直說』 간행 직전에 경상감사로 하여금 農書를 편찬 및 간행하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농서를 하사하였다는 책은 김안국이 언급하고 필사물의 李堦 서문에서 밝힌 책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전 필사물 『農書輯要』는 한문 원문과 한 칸씩 낮추어 쓴 이두문만 적혀 있다. 이두문 안에서 爲有如可, 庫乙良, 須只 등과 같은 이두토들은 小字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서문 내용으로 미루어 현전 필사물은 김안국이 주관하여 안동에서 1517년에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해문이 없는 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필사자가 언해문을 생략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역에 따라 토질과 농법이 다른 점을 반영한 嶺南農書와는 별도로 적었다는 필사후기로 미루어 볼 때 필사자는 한문에 상당히 밝은 영남 지역의 識者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필사 과정에서 언해문을 생략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條目 또는 소제목 밑에 간간히 쓰인 小字雙行의 한글 표기들¹⁰⁾에 의해서도 방증된다. 필사물 전체에서 한글은 오직 이 경우에만 쓰였다. 『牛疫方』에서도 권수제와 본문 처음에 쓰인 染疫病에 대한 주석은 小字雙行으로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 필사물 農書輯要에서는 이두문 안에 한글 표기가 전혀 없다. 이것은 『牛疫方』과 크게 다른 점이다. 『牛疫方』에서는 언해문보다 이두 번역문을 앞세웠으며 약재명에 대한 鄉名의 차자 및 한글 표기가 이두문 안에서 小字雙行으로 부기되어 있다. 예컨대, ‘獾肉汝古里叱同너고리쑹’과 같이 쓰여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필사물 農書輯要是 1517년에 간행된 책을 저본으로 하되 언해문을 생략한 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517년 간본은 1429년 『農事直說』 간행 직전의 이두 번역본에다가 金安國이 추가한 언해문을 덧붙여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문 원문과 이두문은 그대로 두고 언해문만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후대의

10) 耕地 싸귀경헝기, 收穀種 곡식종궤간슈헝기, 大小麥 보리밀, 胡麻 즈믄 등등. 李丞宰(1992:181)는 명사형 어미 ‘-기’를 근거로 정음 표기는 17세기 이후에 적어 넣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석보상절 및 두시언해 초간본 등에서의 용례가 확인되므로 저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李鎬澈(1990:9-10)도 『訓蒙字會』의 한글 표기와 대비한 것을 근거로 간행 당대에 적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필사자는 언해문만 빼고 전재하는 과정에서 이두토들을 小字로 구별하였는데 이 구별이 정확하지 않은 것¹¹⁾은 저본에서는 이두토를 구별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본 이전 시기의 이두¹²⁾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권수제와 권두제에서 ‘新刊’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사실도 이와 관련있다고 판단된다. 이두 번역본이 실재했으며 그 책명이 農書輯要였을 개연성은 실록 기사에서 확인된다.¹³⁾ 한편 1517년 간행 冊板이 安東大都護府에 존재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시된다. 『攷事撮要』 임진왜란 이전 본들엔 冊板目錄 安東에 蠶書와 더불어 農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⁴⁾

3. 意譯과 翻案의 문제

『대명률직해』에는 때로 원문을 번역하지 않은 곳도 있고, 원문은 그대로 둔 채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 곳도 적잖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戶律 課程인데 이 밖에 卷首 부분의 내용들도 일부 번역되지 않았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名例律 徒流遷徙地方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원문에 적힌 地方이 모두 중국 지명이어서 우리나라 지명을 수록한 조목을 새로 다시 덧붙인 후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이두로 번역한 경우이다. 때로는 戶律 立嫡子違法에서와 같이 원문 일부를 번역하지 않고 대신 원문에 없는 내용을 이두문에 덧붙여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번역한 책이라기보다, 이두로 번안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刑典이라 할

11) 이두토 凡矣<87,9L>와 每如<127,15L> 등은 오히려 大字로, 土色乾白<87>에서는 이두토가 아닌 白을 小字로 적는 등 이두토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은 곳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12) 李丞宰(1992)도 필사물의 이두문이 15세기 초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 세종실록 21년(1439) 7월 16일 壬戌條. 책명을 農書輯要로 적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 安東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책판 農桑集撮은 이 간본과 직접 관련 없다고 본다.

만하다. 그 정도로 번역이 원문과 어긋난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대명률직해』의 번역을 번안에 가까울 정도라고 규정하는 견해는 여러 연구물에서 산견된다.

한편, 『양잠경험촬요』와 『牛疫方』에 대해서도 대체로 의역으로 보고 있다. 전자의 경우 收種 항목의 번역이 단적인 예이다. 이두문 번역 과정에서 자세히 부연함은 물론 원문에 없는 내용을 이두문에서는 말미에 덧붙여 수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牛疫方』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나 원문의 ‘灌之’를 이두문에서는 ‘牛口口中 灌注爲乎事’이라 하여 원문에 없는 ‘牛口’를 첨가하였고, 언해문에서도 ‘이베 브스라’로써 부연하여 번역한 것과 같은 요소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양잠경험촬요』도 『대명률직해』보다는 못하나 번안에 가까운 번역, 다시 말하면 심한 의역으로 된 책이라 할 것”(安秉禧 1985/ 2009: 29)이요, 『牛疫方』과 더불어 “逐字譯이 아니라, 意譯이라 하겠다”(安秉禧 1977: 4)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두문에서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 예는 『農書輯要』¹⁶⁾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水稻 항목 중의 이두문 ‘種子乙良 洗淨去雜物爲置 在前農人矣 使內如乎 貌如 浸種落種爲乎矣 天旱水種不得爲去等 浸種 除良 落種爲齊’^{<16장>}은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두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역 또는 번안으로 보는 견해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현전 이두 번역물이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든가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三國志演義를 이두로 번역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원전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대로 옮기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등장인물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물론 제도라든가 작품

15) 安秉禧(1985/ 2009: 28)에서 인용. 편의상 安秉禧(2009)를 활용한다.

16) 현전하는 필사물을 가리킨다. 이하 별다른 언급 없을 때엔 이에 따른다.

의 배경 등 어떤 요소이든지 굳이 독자의 입장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明律 그 자체에 대한 소개와 이해만을 목표로 하였다면 名例律 徒流遷徙地方만 하더라도 원문의 지명과 내용을 그대로 번역했을 터이다. 農書와 蠶書 및 醫書 등의 기술서적의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목표였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농기구와 약재, 사용법 등의 용어와 명칭 등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또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없다는 치더라도 그대로 옮기면 된다.

이와 달리 현전 이두 번역물들은 모두 우리 실정에 맞추어 실제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것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간행된 것들이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와 관습, 약재 및 기구 등은 번역 대상이 아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그에 대응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 번역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내용과 달리 나타나는 현상들은 오히려 제도와 기법 등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두 번역물들의 원문은 原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養蚕經驗撮要』는 農桑輯要 권4 養蠶條 전체의 1/4 또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이광린 1965: 35), 『農書輯要』 역시 農桑輯要 중의 耕墾篇을 약 1/3로 요약하여 이두로 번역을 붙인 農書(오인택 1993:261)이다. 『牛疫方』은 소를 중심으로 한 가축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本草, 牛馬醫方, 事林廣記 등의 漢籍에서 추려 뽑은 내용을 대상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런 이두 번역물들의 경우엔 원전으로부터 발췌한 한문 원문이 대상언어이지, 원전 그 자체가 대상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현전 이두 번역물을 대상으로 의역과 직역, 번안 여부를 논의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른 諺解物 및 일반적인 번

역물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르자면 『養蚕經驗撮要』와 『農書輯要』는 원문과 다르게 번역한 곳¹⁷⁾, 원문에 없는 내용을 이두문에서 덧붙인 곳¹⁸⁾, 원문 일부를 번역하지 않은 곳¹⁹⁾ 등이 적잖으므로 逐字譯이 아니라 意譯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大明律直解』와 『牛疫方』은 비록 대상 원문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直譯에 가깝다고 하겠다.

4. 텍스트 개념과 名詞文 종결 방식

이두로 번역할 때 대상 한문을 어떤 단위로 끊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의 단위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話題로 삼았는가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 때의 각 단위를 일단 텍스트라 명명하기로 한다.

『牛疫方』의 경우엔 비교적 텍스트의 길이가 짧다. 각각의 치료 方文이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텍스트가 한 행을 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얼핏 보면 한 문장 정도를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두 行 이상으로 된 긴 텍스트들도 있음은 물론이다. 대상 텍스트의 길이가 짧은 길든 텍스트의 마지막은 이두문에서 늘 ‘…爲乎事’ 또는 ‘…爲臥乎事’로 끝맺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1) ㉞ 治牛疫 狐腸燒灰 和水 灌之

- 17) 예컨대 『養蚕』에서 원문의 ‘再浴’을 이두문에서는 ‘六七度乙 浴洗’<10L>로, 또 蠶室 마련에 관한 내용 일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 『農書輯要』에서도 ‘牛羊’을 우리 실정에 맞게 ‘牛馬’로 옮기는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18) 『養蚕』의 경우 이두문만 있는 곳<8ㄱ, 14L>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적은 雜忌條와 蠶神에 대한 제사 드리는 법을 적은 祀先蠶神條는 한문만을 덧붙여 놓았다.
- 19) 예컨대, 『養蚕』의 收牛糞條<14L>와 用藥條<36L>는 번역하지 않았음.

- ㉞ 牛矣 傳染病乙 治療爲乎矣 狐腸火燒成灰 和水 牛口良中 灌注爲乎事 <1㉞>20)
- (2) ㉞ 灸法 牛馬疫初發時 身體中有少腫 仔細審之 腫處以燒鐵條烙之又冷水浸豎 令體寒爲度 又以艾炷如小指大 灸神關穴三十壯 神關卽臍中也 <7㉞>
- ㉞ 牛果 馬矣 傳染病乙 治療爲乎矣 身體良中 腫處 有去等 仔細審見鐵條乙用良 火燒烙之爲齊 又 冷水良中 身寒爲限 立置爲齊 又 臍中21) 三十壯乙 灸之爲乎矣 艾炷22)乙 如手小指頭爲乎事 <7㉞-87>

한문 원문 (2㉞)는 적어도 세 문장²³⁾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문에서는 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1㉞)와 마찬가지로 爲乎事로 끝맺는다. 한문을 기준으로 볼 때 문장이 끝날 만한 곳에는 이두문에서 爲齊를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爲齊는 『牛疫方』에서 텍스트의 마지막 종결 위치에 사용되지 않았다.

『牛疫方』 이두 번역문에서의 텍스트 개념은 『直解』²⁴⁾에서도 유효하다. 텍스트를 명사문 형식의 爲乎事로 마감하는 종결 형식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直解』의 편찬 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의 법률 조목은 陰刻된다. 明律의 원문 즉 한문으로 된 律文은 일단 條文과 註釋文으로 나눌 수 있다. 條文은 條目 바로 아래부터 大字로 적힌다. 이와 달리 註釋文은 한 칸씩 낮추어 大字로

20) 한문 원문은 句讀에 따라, 이두문은 단어 또는 어구별로 사이띄기를 하여 옮기되 이두자는 필요한 경우 밑줄을 긋는다. 이두문 안의 藥名 아래 쌍행으로 주석한 한자와 한글 鄉名 표기는 생략한다. 출전은 편의상 1578년(선조 11) 중간본인 晚松文庫本에 따른다.

21) 臍中の 鄉名 한글 표기는 ‘빋복가온더’이다.

22) 艾炷의 鄉名 한글 표기는 ‘쑥뭇글’이다. 영남대 필사본에는 ‘쑥뭇글’ <7㉞>로 되어 있다.

23) 끄트머리에 나오는 ‘神關卽臍中也’는 일종의 주석문이므로 번역에서 생략하되, 이두문에서는 神關 대신에 臍中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24) 『大明律直解』를 가리킨다. 이하 동일하다.

적이다. 大字로 적히는 한문과 달리 이두문인 ‘直解’는 한 칸씩 낮추어 小字雙行으로 적힌다. 따라서 하나의 條目은 ‘條文 - 直解 - 註釋文 - 直解’²⁵⁾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때 각각의 條目이 이두 번역문에서의 텍스트 단위가 되며 텍스트는 爲乎事로 마감하는 원칙²⁶⁾ 아래 번역된다.

條目에 이어지는 明律 한문 條文은 반드시 ‘凡……’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이두문에서 그대로 ‘凡……’으로 전제되나, 凡을 이두어 凡矣로 번역한 곳이 8회 출현한다.²⁷⁾ 한문으로 된 條文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텍스트를 몇 개의 작은 구성요소로 절단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작은 구성요소는 圓圈 즉 ○를 붙여 구분한다. 이 경우의 작은 구성요소는 이두문에서의 텍스트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단된 작은 구성요소는 이두문에서 ‘…(爲)齊’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牛疫方』에서의 예 (2㉔)에서 본 바와 전적으로 똑같다.

텍스트의 마지막을 爲乎事로 종결하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限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예외는 條文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 않거나 准條文이 달리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준조문이란 제약 또는 부대조건 등을 담은 내용으로서, 이들 또한 조문을 나누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直解』에서 行을 달리하여 첫 칸부터 수록된다.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져서 准條文이 나오기 전까지를 텍스트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 1.42ㄴ>, 준조문이든 조문의 중간 부분이든 텍스트 마감 형식인 爲乎事를 사용하는<예: 1.16ㄱ, 20.2ㄴ> 등 혼란된 모습을 보인다. 그

25) 한문 원문의 條文 및 註釋文에 대하여 양자를 묶거나 어느 하나를 생략하는 등 이두로 直解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하여는 朴盛鍾(2003ㄱ: 314-317) 참조.

26) 예외는 刑律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예: 21.1-3, 22.3ㄴ>. 이 경우엔 한문식 성구로 끝맺는다.

27) 출전은 보경문화사에서 영인한 晚松文庫本에 따른다. 권17.2의 첫 행 용례 凡矣는 텍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용례가 아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准條文의 경우엔 대체로 이두 번역문에서 爲乎事로 마감하지 않고 한문 원문의 成句를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마감한다. 두 번째 유형의 예외는 주석문이 달려 있는 경우이다. 한문으로 된 明律 주석문은 원칙적으로 이두문에서 條文과 함께 텍스트에 포함된다. 그런데 때때로 주석문을 텍스트에 포함하지 않고 准條文과 마찬가지로 한문식 구성으로 끝맺곤 한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爲乎事로 종결하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22.3 ㄱ>.

『養蚕』 이두 번역문에서의 텍스트 개념 또한 『直解』의 경우와 거의 같다. 『養蚕』의 한문 원문은 본문과 주석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은 行마다 첫 칸부터, 주석문은 첫 칸을 띄우고 둘째 칸부터 싣는다. 이두 번역문은 셋째 칸부터 실린다. 이 때 한문의 본문과 주석문을 합한 것이 이두 번역문에서의 텍스트 단위가 된다. 텍스트의 분량이 많을 경우엔 圓圈 ○를 이용하여 몇 개의 작은 구성요소로 절단한다. 圓圈 ○는 한문의 본문과 주석문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圓圈 ○를 이용하여 한문 원문을 끊는 곳과 이두문 텍스트를 절단하는 곳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면모를 보인다.

『養蚕』에서의 텍스트 종결 방식은 『直解』와 『牛疫方』처럼 한 유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養蚕』에서의 텍스트 종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뉜다.

- (3) ㄱ. 如前 不解爲去等 解凍爲限 換水 再浸. <養蚕13 ㄱ>
 ㄴ. ① 三十日 已過後 蚕子亦 復生 不冬. <養蚕9 ㄴ>
 ② 萬一 禁忌 不冬爲乎 第亦中 後次 乾死分 不喻 生長 不得. <養蚕10 ㄱ>
 ③ 簇蚕時段 尤長天氣熱時是去 有等以 午時 上新 安徐. <養蚕39 ㄴ>
 ㄷ. 茅草 無去等 乾正 無臭氣爲在 穀草乙 用良 使內. <養蚕39 ㄱ>

(3ㄷ)의 말미에 쓰인 使內는 동사 어간이 아니다. 동사 어간 使內는 『養蚕』에서 ‘爲齊, 是齊, 使內齊’에서 보듯 爲-와 是-와 계열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두자 爲 및 是로 텍스트를 종결하는 예는 없다. 따라서 텍스트 종결 위치에 쓰인 (3ㄷ) 使內의 ‘內’는 확인법 선어말 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에 동명사 어미 ‘-ㄴ’이 통합된 형태를 표시하기 위한 借字로 해석된다(朴盛鍾 2007 참조). 따라서 (3ㄷ)은 이른 시기에 명사문으로 종결하던 형식의 화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형식은 『牛疫方』의 서두에 실린 병조 계목에서도 확인된다. 명사문 종결 형식은 (3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安徐의 경우엔 뚜렷하지 않으나 不冬과 不得은 명사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3ㄱ)의 경우는 다르다. ‘再浸’과 마찬가지로 ‘分明<4ㄴ>, 埋置<7ㄴ>, 立置<12ㄱ>, 肥大<13ㄴ>’ 등으로 텍스트를 마감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맥상 동사구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한문 성구들에 뒤따르는 爲乎事 또는 爲臥乎事과 같은 이두도가 생략된 것일 개연성이 있다. 소제목 ‘蚕事預備’에 대한 이두 주석이 ‘養蚕凡事乙 曾只 預備’로 끝맺고 있음을 감안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養蚕』의 이두 번역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것은 주로 逐字譯이 아니라 意譯인 데 기인하는 듯하다. 한문 원문에다가 자세히 부연 설명하여 번역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개념 또한 圓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소지도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3ㄷ)과 같은 종결 형식이 ○ 표지를 단위로 하여 나타나기도 한다<예: 38ㄱ>.

필사물 『農書輯要』는 半葉 7행17자의 行款을 갖추고 있다.²⁸⁾ 이두 번역문과 小題目은 한 칸씩 내려 적음으로써 한문 본문과 구별하고

28) 5장 후면에서 한문 본문의 첫 행은 17자이나 다음 행부터는 16자로 되어 있어 예외적이다.

있다.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大小麥보리밀

濟民要術大小麥皆須五月六月曠地○崔寔曰凡種大小麥得白露節可種薄田秋分種中田後十日種美田正月可種春麥盡二月止

兩麥田乙良須只五月良中反耕爲有如何瘠薄田乙良白露節良中更良反耕依法落種爲齊中品田是去等秋分時如前落種爲齊上品田乙良秋分後十日如前落種○節氣早晚亦每年不同爲乎等用良右例以一定使內乎所未便爲去等有以節氣乙看審隨宜使內乎矣兩麥段加于新舊間取要穀食是乎等用良須只數多入糞

<農書輯要 13ㄴ-14ㄴ>29)

위 예에서 보듯 圓圈 ○의 사용법이 한문과 이두문에서 같지 않다. 또한 한문과 이두문의 내용이 1:1 대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두문의 후반부는 한문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두문에서의 텍스트 개념이 『直解』 및 『牛疫方』과는 달리 크지 않고 ○을 단위로 하고 있음이 고찰된다. 爲乎事 또는 爲臥乎事과 같은 텍스트 종결 형식은 없고 거의 대부분 한문 성구로 끝맺는다. 그런데 앞서 『養蠶』의 (3ㄷ)과 같이 使內로 끝맺는 방식이 네 군데 보이는데<9ㄱ, 10ㄱ, 17ㄴ, 19ㄴ>, 이 중 9ㄱ 용례는 ○ 앞에 쓰였으므로 작은 단위를 텍스트로 인식함을 드러내 보인다. 이것은 『養蠶』과 마찬가지로 의역인 까닭에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農書輯要』 이두문의 텍스트 개념은 작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명

29) 이두자는 모두 小字로 적었다. 편의상 밑줄로 대신한다.

사문 종결 형식은 원칙적인 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이두 번역의 절차

필자는 한문을 이두로 뒤치는³⁰⁾ 과정을 네 단계로 설정해 본 바 있다.³¹⁾ 논의의 진전을 위해 朴盛鍾(2011ㄱ, ㄴ)을 일부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5) 대상 원문(漢文) : 治牛疫狐腸燒灰和水灌之

句讀 : 治牛疫 狐腸燒灰 和水 灌之

이두로 뒤치는 단계

① 텍스트 절단하기 : 治牛疫 / 狐腸燒灰 和水 灌之

② 어순의 재배열 : 牛疫 治 / 狐腸 燒灰 和水 之 灌

③ 국어 단어로 뒤침 : 牛 傳染病 治療 / 狐腸 火燒 成灰 和水 (牛口) 灌注

④ 토 달기 : 牛矣 傳染病乙 治療爲乎矣 / 狐腸 火燒 成灰 和水 牛口良中 灌注爲乎事 <우역방 1>

한문을 이두로 뒤치는 작업은 먼저 한문에 대한 句讀를 전제로 한다. 이 때 한문의 句讀를 이두 번역의 단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諺解 역시 이러한 句讀 작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편이 온당하다. 이두로 뒤치는 첫 번째 단계인 텍스트 절단하기는 句讀 또는 標點 작업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30) 최현배(1960: 101)는 “언해는 그 주안이 그 본글(原文)인 한문의 이해에 있지만, 뒤침은 반드시 그 한문의 이해를 주안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내용의 포착을 위주한다.”고 하였다. 이두로의 번역이 주로 실용적인 목적 아래 이루어진 점에서 언해보다는 뒤침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고 생각한다. ‘드위티다 > 뒤티다 > 뒷치다 > 뒤치다’로 변천해 온 단어로서 ‘드위.’는 翻의 의미에 해당된다.

31) 朴盛鍾(2011ㄱ, 2011ㄴ) 참조.

텍스트 절단하기는 긴 텍스트의 경우 몇 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자르는 일을 포함하여 문장 차원의 작은 단위까지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하위 구성요소는 圓圈 ○와 같은 부호를 사용하여 그 경계를 표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5②)에서 보듯 한문의 각 의미요소들을 국어 어순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단계이다. SVO형 언어 구조를 SOV형 언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주된 내용이다. 예컨대 원문의 ‘治牛疫’을 ‘牛疫治’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어순의 재배열 단계는 단순히 단어별로 재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어별로 떼어놓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5②)에서 보듯 한문의 狐腸燒灰를 국어 단어 개념에 준하여 ‘狐腸 燒灰’로 분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狐腸 또한 ‘狐腸’으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면도 있고 한문을 저본으로 한 번역인 까닭에 한문식 구성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예컨대, 위 원문 중의 ‘灌之’만 하더라도 이두 번역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적잖다. 『養蠶』과 『農書輯要』에서 한문 成句로 끝맺는 방식이 많은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된다.

국어 단어로 뒤치는 단계는 재배열된 한자 또는 한자복합체들의 의미요소를 국어의 단어 형태로 뒤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어휘의 수용과 代置가 발생한다. 漢字는 단음절 단어 형태소이다. 국어에서 1음절 한자어가 자립성을 갖는 경우엔 그대로 차용되거나 원문 한자에 대응하는 국어의 1음절 한자어로 대치된다. 그러나 자립성을 가진 1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는 적기 때문에 원문의 한자 대신에 2음절로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문 한자의 의미를 좀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기워 넣거나,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한자를 덧붙이게 된다. (5③)의 ‘燒→火燒, 灰→成灰’는 전자의 예이고, ‘治→治療’와 『直解』에서의 ‘相→互相, 毆→毆打<20.6L>, 罵→罵詈

<21.2 ㄱ>’는 후자에 속하는 예이다. 명사류 1음절 한자의 경우엔 그에 대응하는 국어 단어로 뒤치는 일이 흔하다. (5③)의 ‘疫→傳染病’과 『直解』에서의 ‘媒→中人’<25.1 ㄴ>이 그 예이다. 한문 원문에서의 多音節 복합어 또한 차용 또는 대치의 과정을 겪게 된다. 국어 단어로 뒤치는 단계에서 한문의 虛詞類가 있을 경우엔 잔존하게 된다.

한문을 이두로 뒤치는 마지막 단계는 토 달기이다. 이두토는 단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문법 범주를 결정하고 문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선 단계에서 적절한 단어로 변환 대체되지 못한 채 잔존했던 한문의 虛詞類는 그에 대응하는 이두토로 대체되면서 삭제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마지막 종결부는 명사문으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텍스트 종결부에 쓰인 使內는 이른 시기의 명사적 용법의 잔재로 해석된다. 종결부에는 대체로 『直解』와 『牛疫方』에서 보듯 이두토 爲乎事 또는 爲臥乎事을 덧붙인다. 이러한 이두토를 생략할 경우엔 한문식 成句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으로 끝맺게 된다. 이것은 특히 한문 원문과 상당히 다르고 또 종종 부연하여 이두로 번역한 『養蚕』과 『農書輯要』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종결 형식이다.

참고로 위 가설에 따라 긴 예문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예문은 텍스트 첫 부분이다. /는 절단 표지, ()는 삽입 표지, ×는 삭제자, []는 자리를 옮긴 표지, 밑줄은 토를 단 것을 가리키며 이탤릭체는 국어 단어로 뒤친 것을 가리킨다. 원문의 ‘非奉’을 ‘無亦’로 옮긴 것은 축자역이 아닌 경우이다.

- (6) ① 凡有司官吏人等 非奉上司明文 擅自科斂所屬財物 / 及管軍官吏總旗小旗 科斂軍人錢糧賞賜者 / 杖六十 <刑律 受贓 因公擅科斂>
 ② 凡 有司官吏人等 上司明文 非奉 擅 所屬財物 科斂 / 及 管軍官吏總旗小旗 軍人錢糧 科斂 [自] 賞賜 者 / 杖六十
 ③ 凡 (×有司)官吏(×人)等 仰屬官明文 無亦 (因公) 趣便以 (×所屬)財

物 收斂 / (×及) 管軍官吏頭目統主(等) 軍人 錢糧 收合 自意 賞賜 (×者) / 杖六十

- ④ 凡 官吏等亦 仰屬官 明文 無亦 因公爲 趣便以 財物乙 收斂爲旆 / 管軍官吏頭目統主等亦 軍人矣 錢糧乙 收合爲 自意以 賞賜爲在 乙良 / 杖六十爲乎矣 <23.6 ㄱ>

6. 이두 번역문의 어휘

이두 번역문에 나타나는 각종 어휘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1 중국계 한자어의 차용

1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자립성을 가진 단어로 그대로 차용된 대표적인 예들로는 病<직해 20.4ㄱ>과 驛<직해 17.6ㄴ>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어와 달리 人은 자립성을 가진 단어로 차용되어 사용되었다. 이두 계사 -是-와 직접 통합된 예<직해 18.19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통합된 혼종복합어 捧上人<직해 23.3ㄱ>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2음절 이상의 한자복합어로서 국어에 차용된 단어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특징적인 단어들을 『直解』에서 몇 개만 보이면 (7)과 같다.

- (7) ㉞ 同僚<1.14ㄱ 1.33ㄴ>, 明文<23.6ㄱ 28.2ㄱ>, 誣告<19.7ㄴ 22.4ㄴ>, 本色<1.28ㄴ 7.5ㄱ>, 信牌<3.11ㄴ 3.11ㄴ>, 實封<1.8ㄱ 28.12ㄴ>, 良人<1.12ㄱ 1.17ㄱ>, 言語<3.5ㄱ 20.3ㄱ>, 人口<1.17ㄱ 28.19ㄴ>, 印信<1.28ㄴ 3.2ㄴ>, 住持<4.3ㄴ 6.7ㄴ>, 親聞<1.37ㄱ 2.6ㄴ>, 通奸<9.2ㄱ 19.3ㄱ>, 行移<3.5ㄱ 3.10ㄴ>
- ㉟ 買休人<25.2ㄴ 25.2ㄴ>, 下手人<19.5ㄱ 20.3ㄴ>

차용어라 할지라도 그 용법과 의미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는 세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印信’의 경우, 印信을 찍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원문과 달리 직해에서는 ‘踏印’이라는 한국한자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賣買와 買賣는 한문과 이두문에서 둘 다 사용되고 있음이 흥미롭다<직해 1.24ㄴ, 23.5ㄴ>.

『養蚕』에서 발견되는 중국계 한자차용어 중에는 ‘沐浴<22ㄱ>, 摘取<3ㄴ>, 聞香<3ㄴ>’ 등이 있다. 『農書輯要』에서도 春耕<3ㄱ, 9ㄱ>, 秋耕<3ㄴ, 8ㄴ>, 白露<13ㄱ> 등의 차용 한자어들이 보인다. 菘豆는 『養蚕』과 『農書輯要』에 다 같이 쓰였는데, 후자에는 소제목 아래 ‘녹두’라는 한글 표기도 나온다<18ㄱ>. 『衿陽雜錄』에서는 ‘녹두’로<李基文 1975:103>, 『訓蒙字會』에서는 ‘록도’<叡山本 7ㄱ>로 표기되었다.

6.2 한국한자어³²⁾

1음절 한국한자어로서는 문서를 세는 단위인 원문의 宗 대신 쓴 道<직해 3.7ㄱ>가 주목된다. 고문서에서도 그 용례가 발견된다<예: 1463년 李禎妻金氏所志>.

한문 원문의 1음절 한자어를 이두로 뒤치는 과정에서 2음절 한자어가 양산되는 것이 이두 번역의 큰 특징이라 할 만하다. 단음절 단어 형태소인 각각의 한자가 국어에서 자립성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성된 2음절 한자어들 모두가 한국한자어로 자리매김하지는 않는다. 원문의 1음절 한자를 이두문에서 2음절 한자어로 뒤치는 용례를 몇 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예시한 『牛疫方』에서의 용례 (1) 治→治療, 灌→灌注가 바로

32) 한국한자어에 관해서는 『校訂 大明律直解』의 吏讀略解가 참고된다. *표를 붙인 표제어들이 한국한자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총 274개가 수록되었는데 제외할 것, 추가할 것 등 면밀히 다듬어야 할 것이다. 朴盛鍾(2003ㄴ) 참조.

이에 해당한다. 원문의 ‘相毆’를 직해문에서 ‘互相 毆打’³³⁾로 뒤친 것도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인데<직해 20.6-7>, 이와 같이 원문의 한자에다가 한 字를 덧붙여 2음절로 만드는 예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農書輯要』에서 보이는 春→春節<4ㄱ>, 牛→牛隻<7ㄴ, 8ㄴ>, 人→人喫<7ㄴ>, 燒→火燒<16ㄱ>는 주목할 만하다. 이 중 春→春節과 牛→牛隻은 접미사와 유사한 성격의 한자를 덧붙인 것이며, 喫은 일꾼을 나타내던 한국한자로서 船喫, 丁喫 등과 같이 사용된 예가 있고, 燒→火燒는 『牛疫方』 이두문에서도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2음절 한자어들 중 한국한자와 통합된 人喫는 한국한자어로 귀속된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互相을 『校訂 大明律直解』의 吏讀略解에서는 한국한자어로 등재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중국 詩 - 이를테면 杜甫의 시에도 이것이 쓰여 있어 다소 문제시된다. 중국 시에 互相이 쓰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단어 즉 합성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따져 볼 소지 또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국어에서 자립성을 가진 한자어들을 묶어 다루는 입장을 취하되, 각각의 2음절 한자어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국한자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과제로 남겨 둔다.

한문 원문의 다음절 복합어를 뜻이 비슷한 다른 한자어로 변환하는 경우는 그 수효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詐欺→欺罔<직해 1.24ㄴ>, 換易/抵換→回換<직해 5.4ㄱ, 7.6ㄱ>’ 등이 눈에 띈다. 이 중 回換은 『農書輯要』에서도 몇 번 쓰였다<15ㄱ, 16ㄴ>. 이것은 번역 당시 한국인의 언어 의식에 좀더 가까운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산물인 듯하다.

원문의 한자 음절수에 상관없이 적절한 한국한자어가 있을 경우엔

33) 互相은 『農書輯要』 14ㄴ에서도 그 용례가 발견된다.

당연히 그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남의 혼인이나 남녀를 중매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中人이 그 한 예이다. 中人은 명률 원문의 媒, 媒人, 媒合人의 역어로 사용되었다<직해 25.1ㄱ, 6.10ㄴ, 25.4ㄴ>. 재산의 분배나 매매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證保의 용례도 주목된다. 증명하는 일 또는 증거의 의미로 쓰인 證佐, 그리고 증인의 뜻으로 쓰인 牙保를 모두 證保로 옮기고 있다<직해 1.40ㄱ, 4.5ㄴ>. 之次 또한 빈번히 사용되는데 『農書輯要』에서의 용례도 발견된다<9ㄴ>. 이 밖에도 ‘御事→內賜<12.3ㄱ>, 奏聞→申聞<1.8ㄱ>, 花利→邊利<5.5ㄴ>’ 등이 『直解』에서 확인된다. 次第는 『直解』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養蚕』에서도 그 용례가 발견된다.

우리말 통사구조에 맞춘 造語도 있어 흥미롭다. 『直解』의 원문 守門人을 이두문에서 門直人으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의 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에서 보인 紙作人과 같은 성격의 한국한자어이다.

6.3 고유어

『養蚕』 이두문에는 ‘高致, 飛介, 佐伊, 波獨’<2ㄱ, 3ㄱ, 30ㄱ, >과 같은 한자표기들이 나온다. 이들은 각각 고유어 ‘고티, 놀개, 자리, 바둑’에 대응한다. 이와 같이 고유어 명사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예들이 이두문에서 적잖이 발견된다. 『直解』에서의 ‘德應’<12.2ㄱ>도 고유어 표기의 좋은 예가 된다. 『農書輯要』에서는 ‘推介, 所訖羅, 手愁郎, 仇耳, 刀叱古尔伊, 于音, 心音’ 등의 표기가 쓰였는데 이들은 각각 고유어 ‘밀개, 씨레, 쇠스랑, 구시, 돛고마리, 움, 밍슴’에 대응한다. 『牛疫方』에도 약재명들이 꽤 출현하지만 이들은 小字雙行으로 주석에 실

린다. 예컨대, ‘千金木葉火乙叱羅毛葉棼나모넵’<4ㄴ>과 같이 표기된다. 이러한 한글 표기는 이두문에 포함된 어휘 자료는 아니므로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두문에 쓰인 고유어라 하면 결국 이두자 중에서 문법 형태 표기만을 뺀 나머지가 모두 대상이 된다. 명사류는 물론 부사어와 동사어간들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고유어와 관련하여 면밀히 고찰할 대상은 喫破와 같은 표기들이다. 이것은 『直解』에서 4회<5.7ㄱ, 16.5ㄴ>, 『養蚕』에서는 1회 쓰였다. 원문에서 동사로 쓰인 食 또는 毀食의 역어로 사용되었는데 단순한 한자어로 처리하기가 망설여진다. 현대어의 ‘먹어 치우다’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표기 喫持는 고문서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된다. 『養蚕』에서 특히 이러한 성격의 복합 한자표기들이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 ‘毀破<4ㄱ>, 驚動<22ㄱ>, 移來<5ㄱ>’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한문 원문의 1음절 한자에 대한 이두 번역 과정에서 단순히 유사한 다른 한자를 덧붙여 2음절 자립성 한자어를 만드는 유형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驚動과 移來만 하더라도 각 한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새겨 ‘놀라 움직이다, 옮겨 오다’로 읽으면 문맥의 흐름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養蚕』 이두문에서 동사어간 ‘두-’를 표기한 置之 용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移置<20ㄱ, 38ㄴ>, 立置<5ㄱ, 10ㄱ>, 棄置<7ㄱ, 37ㄱ>, 埋置<7ㄴ, 37ㄱ>, 卷置<12ㄴ>, 藏置<14ㄴ>, 在置<5ㄱ, 20ㄱ>’와 같은 예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置之는 보조동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정은 이두 복합동사로 쓰인 爲置<3ㄴ, 6ㄴ>와 畵是置<34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래의 의미를 살려 ‘하여 두다, 시켜 두다’의 뜻으로 풀이하든 置之를 보조동사로 인식하든 그 어느 쪽이나 문맥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두문에 나타나는 이런 유형의 표

기들은 고유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4 混種語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합된 어형들이 이두 번역문에서 간간이 발견된다. ‘별훈’으로 읽히며 동사와 명사적 용법을 지닌 別爲<직해 17.7 ㄱ>와 같은 것이 혼종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假捧上와 捧上人이다.

원문의 ‘收支’를 ‘捧上上下’³⁴⁾로, ‘正受正支’를 ‘正數以 捧上上下’<직해 7.7 ㄱ>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 중 上下 역시 혼종어에 귀속된다. 上下에 대하여 『經世遺表』에서는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上은 次(차) 또는 茲(자)로 읽히는 이두자로 설명하였다<권12 地官修制 倉廩之儲 1>. 上下의 上은 尺文의 尺과 동일한 기원 ‘*장’에서 유래한 이표기일 가능성이 높다(朴盛鍾 1996:146-150, 103-105). 捧上은 이와 달리 고유어 ‘받자’로 읽히는 이두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접사 假-와 1음절 한자어로 쓰였던 人과 직접 통합한 점이 주목된다.

7. 마무리

본고는 한문을 이두로 번역한 글의 문체 및 어휘의 몇 가지 특징을 현전하는 4종의 刊本 및 필사물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두 번역은 대상언어를 일정한 단위 즉 텍스트로 나누어 인식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명사문으로 텍스트를 종결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

34) 전성호(2011)에서는 이 밖에도 重記 등의 용어를 토대로 복식부기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다. 이러한 특징은 『大明律直解』와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養蚕經驗撮要』와 필사물 『農書輯要』에서도 비록 텍스트의 개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그 원칙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두 번역은 한문 원문에 대한 句讀를 전제로 하여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단어 형태소로 기능하는 원문의 1음절 漢字에다가 유사한 의미의 한자를 덧붙이거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補足 기능의 한자를 덧붙여 2음절 한자어를 다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이다. 두 字로 만든 이두 번역어 중에는 고유어 복합동사의 표기로 추정되는 것들이 적잖이 발견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두문에 나타나는 한국한자어 및 고유어 표기들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고찰 또한 요청됨은 물론이다.

논의 과정에서 필사물 『農書輯要』는 1517년 刊本을 底本으로 하되 언해문을 생략한 채 전재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저본은 1429년 『農事直說』 간행 직전에 이두로 번역한 책을 바탕으로 하여 언해만을 덧붙인 형태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저본의 발굴을 기 대해 본다.

참고문헌

- 『大明律直解』(고려대학교 晚松文庫 소장본, 보경문화사 영인 1986)
 『校訂 大明律直解』(조선총독부 中樞院調查課 編, 1936)
 『養蠶經驗撮要』(한국서지학회 『書誌學』 6에 영인 1974 / 李喆洙(1989)에 수록)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고려대학교 晚松文庫 소장본, 여강출판사 영인 198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 2009)
-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일조각.
 김치우. 2007. 『고사찰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2-6. 『韓國漢字語辭典』 卷 1-4.
 朴秉濠. 1974.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朴盛鍾. 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朴盛鍾. 2003ㄱ. “『大明律直解』 吏讀의 예비적 고찰.” 『震檀學報』(진단학회) 96. 289-321.
 朴盛鍾. 2003ㄴ. “大明律直解의 韓國漢字語 一考察.” 『民族文化論叢』(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8. 61-83.
 朴盛鍾. 2007. “吏讀字 ‘內’의 讀法.” 『口訣研究』(구결학회) 19. 139-170.
 朴盛鍾. 2011ㄱ.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과 그 吏讀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국어사학회) 12. 193-228.
 朴盛鍾. 2011ㄴ. “조선 시대의 이두와 그 연구 방법의 편모.” 『제41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53.
 法制處. 1964. 『大明律直解』. 法制資料誌 제13집.
 심경호. 2008. “이두식 변격한문의 역사적 실상과 연구과제.” 『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57. 201-232.
 安秉禧. 1973. “중세 국어 연구 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9-1. (安秉禧(1992)에 수록)
 安秉禧. 1977. “養蠶經驗撮要和 牛疫方の 吏讀의 연구.”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7. 3-22.
 安秉禧. 1985ㄱ.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奎章閣』(서울대 규장각) 9.

1-22.

- 安秉禧. 1985.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민족문화추진회) 11. (安秉禧(2009)에 수록)
- 安秉禧. 1992. 『國語史 資料 研究』. 신구문화사.
- 安秉禧. 2003. “『大明律直解』의 書名.” 『韓國語研究』(태학사) 1. 117-140.
- 安秉禧. 2009. 『國語史 文獻 研究』. 신구문화사.
- 吳仁澤. 1993. “朝鮮初期의 《農書輯要》 刊行에 대하여.” 『釜大史學』 17. 255-272.
- 오인택. 1999. “『農書輯要』를 통해서 본 조선 초기의 耕種法.” 『지역과 역사』(부경역사연구소) 5. 87-118.
- 李光麟. 1965. “養蠶經驗撮要에 대하여.” 『歷史學報』(역사학회) 28. 25-38.
- 李基文. 1974. “『養蠶經驗撮要』 解題.” 『書誌學』(한국서지학회) 6. 101-104.
- 李基文. 1975. “衿陽雜錄의 穀名에 대하여.”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5. 99-110.
- 李丞宰. 1992. “『農書輯要』의 吏讀.” 『震檀學報』(진단학회) 74. 179-194.
- 李喆洙. 1989.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研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 李鎬澈. 1990. “『農書輯要』의 農法과 그 歷史의 性格.” 『經濟史學』(경제사학회) 14. 1-41.
- 張允熙. 2003. “『大明律直解』의 書誌學的 考察.” 『震檀學報』(진단학회) 96. 265-288.
- 전성호. 2011. “『大明律直解』에 투영된 고려회계의 특징.” 한국고문서학회 2011년 5월 월례발표문.
- 鄭肯植·趙志晚. 2001. “大明律 解題.” 『大明律講解』(서울대학교규장각).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7-60.
- 鄭亨愚·尹炳泰. 1995. 『韓國의 冊板目錄』 上,下,補遺·索引. 保景文化社.
- 조지만. 2007.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景仁文化社.
- 최식. 2008. “『句讀解法』, 漢文의 句讀와 懸吐, 口訣.” 『民族文化』(한국고전번역원) 32, 105-155.
- 최현배. 1960. 『고친 한글갈』. 정음사 (초판 1940).

박성중(Park, Seong-jong)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210-722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전화: 033-649-7203
전자우편: psjpsj-2@hanmail.net

원고접수일: 2011. 10. 12
심사완료일: 2011. 11. 01
게재결정일: 2011. 11. 06